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어 르 신 복 지 과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1인)
찬 성 자 : 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 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8인)

1. 제안이유

중복적인 자치법규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구미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장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장사시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무연고 유골 안치 연수 변경(안 제2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6조의2

나. 부서검토: 어르신복지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2. “구미시추모공원”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구미시공설숭조당”이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구미시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골(散骨)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7. “사용권자”란 제6호에 따라 사용권을 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사용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사문화 개선 등) ① 시장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 설치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지선정) 시장은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를 공모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장사시설 운영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구미시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또는 구미시공설숭조당(이하 “숭조당”이라 한다)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타인에게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제9조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 또는 숭조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사용료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정해진 금액의 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관내와 관외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설묘지와 숭조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은 공설묘지 사용신청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중 구미시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과 유택동산 사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숭조당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단, 최초 1회에 한정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추모공원이 위치한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장사시설 중 추모공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화장지원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추모공원이 아닌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의 공사 또는 재난사고, 고장,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2.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2.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를 따른다.

④ 화장지원금은 별표2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⑥ 화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2개월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화장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⑧ 화장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망진단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화장증명서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7. 신청인 통장사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⑨ 제8항제1호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

용하기 전에 추모공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추모공원은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숭조당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안치된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치 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제30조의 경우로써 매장전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6조(화장유골의 처리)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산골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散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1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나 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9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와 경비를 수탁시설에만 사

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및 문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및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서류·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공설숭조당

제23조(봉안의 대상) ① 숭조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시 주민등록이 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2. 사망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3.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개장 전 분묘소재지 또는 봉안소재지가 시 또는 경상북도인 유골
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6.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단, 법적 배우자에 한함)
7.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라야 한다.

제24조(유공자 등 봉안 구역) ① 시장은 숭조당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봉안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구역 대상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한다.

③ 기존 숭조당 안치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등 봉안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25조(사용기간) ① 유골의 안치 기간은 유연고 유골은 15년으로 하며 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한 번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무연고 유골은 안치된 날로 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숭조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봉안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① 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3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신청이 없거나, 유골인도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유골의 인도) 숭조당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유골인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장 공설묘지

제28조(매장의 대상)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자

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3.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제29조(사용면적) 공설묘지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30조(사용장소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 등 시설물의 설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

제32조(분묘의 설치기간 등)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사용권자가 해당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묘지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구미시 옥계동 511번지(1,045㎡) 구미시 옥계동 512번지(1,861㎡) 구미시 옥계동 513번지(1,438㎡) 구미시 옥계동 산 5-1번지(14,082㎡) 구미시 옥계동 산 6-1번지(10,413㎡) 구미시 옥계동 산 108번지(3,091㎡)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1번지(17,058㎡)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2번지(11,90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3번지(21,42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4번지(18,248㎡)
봉안시설	구미시 공설숭조당	1관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 2관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1
화장시설	구미시 추모공원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

[별표 2]

장사시설별 사용료(제12조 관련)

1. 구미시공설묘지 (30년) (단위: 원)

명 칭	사용료		관리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1제곱미터	24,000	기당1년	2,000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1제곱미터	24,000	기당1년	2,000

※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배액을 가징한다.

2. 구미시공설승조당 (15년) (단위: 원)

구분 / 실별	사 용 료		비 고
	관 내	관 외	
일 반 실	200,000	700,000	
부부단실	300,000	1,100,000	
무연고실	60,000	150,000	
외국인실	120,000	300,000	

※ 관내·관외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 부부단실은 부부가 동시에 안치하여야 사용 가능함.

3. 구미시추모공원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관내	관외	
화장 시설	일반 사체	15세 이상(1구)	100,000	600,000	
		15세 미만(1구)	80,000	350,000	
	죽은태아(1구)		40,000	170,000	
	개장유골(1구)		60,000	250,000	
유택동산	1구		10,000	10,000	

※ 죽은 태아는 사산증명서를 발급받은 태아를 말한다.

[별표 3]

구미시 장사시설 사용료 관내·관외 구분 (제12조 관련)

구 분	관 내	관 외	비고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사망일 현재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분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이거나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분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 지역이면서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골분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외국인 사망자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또는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부부단실 관내 적용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이어야 한다.

※ 공설숭조당 연장계약시 관내·관외 구분은 최초 안치시의 계약에 따른다.

[별표 4]

공설승조당 사용료 반환기준(제15조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6개월 이내	75
2	6개월초과 1년미만	70
3	1년초과 2년미만	65
4	2년초과 3년미만	60
5	3년초과 4년미만	55
6	4년초과 5년미만	50
7	5년초과 6년미만	45
8	6년초과 7년미만	40
9	7년초과 8년미만	35
10	8년초과 9년미만	30
11	9년초과 10년미만	25
12	10년초과 11년미만	20
13	11년초과 12년미만	15
14	12년초과 13년미만	12
15	13년초과 14년미만	10
16	14년초과 15년미만	7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7">화장지원금 지원 신청서</td><td>처리기간
60 일</td></tr>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사망자와의 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
(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신청금액</td><td colspan="6">금 원</td></tr>
<tr><td>지급은행</td><td colspan="2"></td><td>계 좌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사망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사 망 일</td><td colspan="2"></td></tr>
<tr><td>화장 장소</td><td></td><td>화 장 일</td><td></td><td>화장장
사용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td></tr>
<tr><td>신청인 제출서류</td><td colspan="7">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1부(원본)
2. 사망진단서 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화장증명서 1부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td colspan="7">1. 신청인 제출서류 중 3번, 4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td></tr>
<tr><td colspan="8">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d></tr>
<tr><td colspan="8">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able>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사망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사망일시		사 망 장 소	
	화장일시		화 장 장 소	
확인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특 기 사 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구미시 추모공원 화장예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화장지원금 지급대장

일련번호	지급일자	사 망 자			신 청 자				지급내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액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사항

○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사시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사시설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검토 결과

○ 구미시 장사시설 운영 전반을 규정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장사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가 유사한 명칭으로 병존해왔음

○ 중복적인 자치법규의 통합·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개정사항 반영

▪ 무연고 유골 안치 기간(안제25조제2항) : (당초) 10년 → (변경) 5년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명확화를 통한 혼란 방지 및 조례의 체계성과 일관성 제고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향후 검토에 따른 장사시설 추가 설치 시,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증진 등 이에 수반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후 비용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김시훈(☎054-480-5163)